시설, 재택 관련 서비스 ※직접 각 시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호노인 복지시설(특별양호노인홈)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증상이 있어 집에서 개호하기 곤란한 분들에게 개호직원 등이 식사·목욕 등의 개호와 기능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소에 있어서는 개호가 필요한 정도 및 가족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입소의 필요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분이 우선적으로 입소하게 됩니다. 2015년 4월 1일부터 새로운 입소자는 원칙적으로 요개호 3 이상에 해당하는 분이 됩니다. (요개호1·2이며 특례입소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입소 대상이 됩니다. 이용자 부담액 등에 관해서는 하기를 참조)

※지역밀착형 서비스(특별양호노인홈)

지역밀착형 개호노인 복지시설 입소자 생활개호

입소 정원이 29명 이하인 소규모 개호노인 복지시설에 입소한 분에게 개호직원 등이 식사 · 목욕 등의 개호와 기능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1일부터 새로운 입소자는 원칙적으로 요개호3 이상에 해당하는 분이 됩니다. (요개호1·2이며 특례입소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입소 대상이 됩니다. 이용자 부담액 등에 관해서는 하기를 참조)

개호노인 보건시설

간호나 개호가 필요한 고령자 및 치매 증상이 있는 분에게 재활치료 등의 의료케어와 생활 서비스를 일체적으로 제공하여 자택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요지원1 · 2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 부담액 등에 관해서는 하기를 참조)

개호요양형 의료시설(보다 많은 개호직원이 배치된 병원 등)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한 고령자에게 의료적인 관리 하에서 개호, 기능훈련, 그 밖에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요지원1 · 2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 부담액 등에 관해서는 하기를 참조)

※지역밀착형 서비스(특별양호노인홈)

시설 서비스비용 및 이용자 부담

시설서비스 비용은 요개호도와 시설형태, 직원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의 10% 또는 20%와 숙식비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시설 서비스비용 [표준적인 시설 규모와 직원 배치된 유닛형 개인실인 경우의 기본비용]

시 설	서비스비용 월액(100%)	이용자 부담 월액(10%)	이용자 부담 월액(20%)
개호노인 복지시설 (입소 정원 29명 이하를 포함)	207,700엔 (요개호1) ~297,094엔 (요개호5)	20,770엔 (요개호1) ~29,710엔 (요개호5)	41,540엔 (요개호1) ~59,419엔 (요개호5)
개호노인 보건시설	257,215엔 (요개호1) ~327,335엔 (요개호5)	25,722엔 (요개호1) ~32,734엔 (요개호5)	51,443엔 (요개호1) ~65,467엔 (요개호5)
개호요양형 의료시설	254,889엔 (요개호1) ~423,043엔 (요개호5)	25,489엔 (요개호1) ~42,305엔 (요개호5)	50,978엔 (요개호1) ~84,609엔 (요개호5)

※월액은 1개월을 31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부담(10%)에는 소득에 따라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숙식비는 소득이 낮은 분의 소득에 따른 부담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밖에 별도로 일상생활비용 등은 본인 부담이 됩니다.